



서울고등법원

제 20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5재나632 조합원부담금청구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성원,오피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71번길 5 (하대원동)

송달장소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 101동 1702호 (하대원동
539, 자이아파트)

대표자 조합장 정휘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병욱

피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항소인

김중학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 114동 1202호 (하대원동 539, 자이
아파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 9. 5. 선고 2008가합814 판결

재심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8나85996 판결

변 론 종 결 2015. 9. 23.

판 결 선 고 2015. 10. 23.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원고(재심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재심원고, 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64,369,000원, 선정자 김동현은 136,513,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1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2008. 1. 23. 피고와 선정자 김동현(피고와 선정자를 합하여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814호로 이 사건 조합원부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9. 5.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는 64,369,000원, 선정자 김동현은 136,513,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11%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피고 등은 이 법원 2008나8599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2. 12.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 등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다.

다. 이에 피고 등이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9. 5. 28.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2009다20727호)이 선고되어 2009. 6. 1.경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존재 여부

1) 피고의 주장

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원고의 2003. 8. 24.자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하여 조합원 4/5 이상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은 채 적법하게 재건축에 관한 동의서를 받은 것처럼 위조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피고는 원고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6. 17.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도 갖추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피고가 수원지방법원¹⁾ 2003카합351호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고 실시하였는바,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위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는 위조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피고는 원고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6. 30.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도 갖추었다.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오기로 보인다.

다) 재심대상판결은 제1항 기초사실 중 마항에서 '원고의 2003. 3. 8.자 새로운 재건축결의(사업계획동의)에 피고 등이 동의하지 않자 원고가 2003. 7. 10. 피고 등을 상대로 구분소유권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다.'라는 취지로 실시하였는데, 2003. 3. 8.자 사업계획동의 건의 사업시행지는 하대원동 218-1 외 6필지 및 세대수가 979세대인 반면 성남시장의 2003. 6. 30. 사업계획승인의 사업시행지는 하대원동 218-1 외 10필지 및 세대수가 986세대로서, 위 2003. 3. 8.자 사업계획동의의 건은 위 조 또는 변조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 사유가 있다. 피고는 원고를 소송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15. 6. 30.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이 있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도 갖추었다.

2)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나아가 제2항 소정의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또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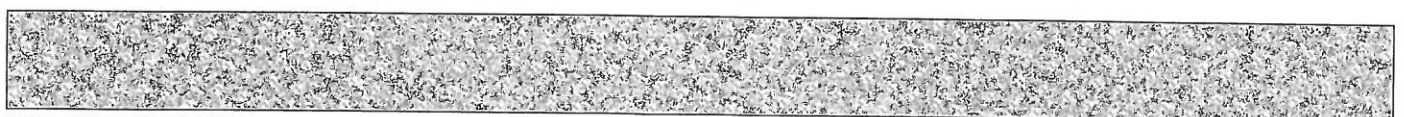
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거나 해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나) (1) 원고의 2003. 8. 24.자 관리처분계획안에 관한 동의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카합351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서가 위조되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 건대, 원고의 대표자 또는 제3자 등이 위 서류를 위조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나아가,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증거부족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후단)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도 선해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은 확정판결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재심제기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2항 후단에 기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피고가 주장하는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된 날인 공소시효 완성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의 제척기간 이내에 제기되어야 적법하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341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 3759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동의서는 2003. 8. 24.경 위조되었다는 것이고,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수원지방법



원 성남지원 2003카합351호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은 2003. 7. 9. 위 법원에 신청이 접수 되었으므로 피고 주장에 따르면 늦어도 위 가처분신청서는 2003. 7. 9.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시행되던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에 의하면,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설령 원고의 대표자 등이 위 서류들을 위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소시효는 늦어도 2008. 8. 23. 무렵 완성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재심사유가 생긴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5. 7. 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원고의 2003. 3. 8.자 재건축결의(사업계획동의)의 건이 위조 또는 변조 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조 또는 변조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재건축결의(사업계획동의)에 관하여 시장·군수가 그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여 승인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고 하여 위 재건축결의가 위법(위조 또는 변조라는 주장을 선택한다)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2003. 3. 8.자 재건축결의와 관련된 동의서 등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취지로 선택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시효는 늦어도 2008. 3. 7. 무렵 완성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재심사유가 생긴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5. 7. 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 존재 여부

1)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제1항 기초사실 중 마항에서 '원고의 2003. 3. 8.자 새로운 재건축결의(사업계획동의)에 피고 등이 동의하지 않자 원고가 2003. 7. 10. 피고 등을 상대로 구분소유권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다.'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데, 성남시장은 2003. 3. 8.자 재건축결의(사업계획동의)에 대하여 2003. 6. 30. 사업계획승인을 했고, 2003. 8. 24.자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2003. 11. 26. 사업계획변경승인을 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바뀐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앞서 본 대로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항은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전에 생긴 때에는 그 판결확정일로부터, 재심의 사유가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에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각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2003. 8. 24.자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하여 2003. 11. 26.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있었다는 것이어서 이는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재심사유가 생긴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5. 7. 3.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양현주

양현주



판사

장윤석

장윤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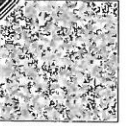


판사

조진구

조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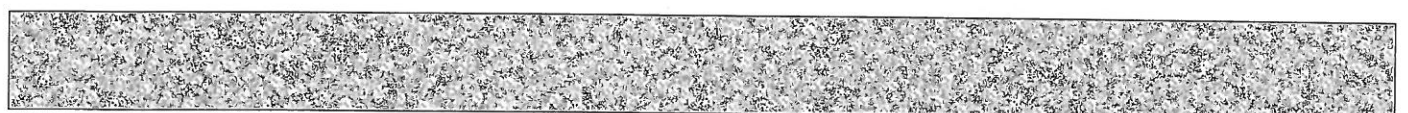
선정자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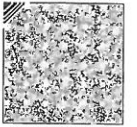
1. 김중학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363, 114동 1202호 (하대원동 539, 자이아파트)

2. 김동헌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5050 (2층). 끝.





등본입니다.

2015. 10. 26.

서울고등법원

법원주사보 김동우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